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26
----------	------

2025년 4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31일, 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일
다. 상정일자: 제33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임만균 의원]

가. 제안이유

- 2024년 7월 시민공모를 통해 “리버버스”의 명칭이 “한강버스”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제328회 임시회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 당시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감사 제출 시기를 조정하고, 친환경 선박 배터리의 안전 점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한 요금 결정 및 위원회 구성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업무협약 변경 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목 및 조문 내 ‘리버버스’ 부분을 ‘한강버스’로 변경.
- 사업자의 안전 운항을 위한 선박 상태 점검내용에 친환경 선박의 배터리 점검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태 점검 명시(안 제7조제3항).
- 매년 회계감사 결과보고 시기를 4월에서 3월로 변경(안 제9조).
- 위원회 심의사항에 운항 요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6조제4호).
-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에 재정기획관을 추가 (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 ‘운영과 관련한세부사항’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오기 정정(안 제22조제1항).
- 협약에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안 제2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공모로 선정된 “한강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조 항	내 용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명칭 변경	리버버스 → 한강버스
제7조	친환경 선박의 배터리 안전점검 명시
제9조	회계감사 시기를 4월에서 3월로 조정
제16조	심의위원회에 운항 요금 및 할인에 관한 권한 부여
제17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정기획관 추가 및 정원 확대(7명→10명)
제22조	협약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 신설

나. 세부 검토 의견

- 안 제7조는 사업자의 안전 운항을 위한 선박 상태 점검 내용에 친환경 선박의 연료 탱크와 배터리 상태 점검을 포함하는 것으로 배터리를 포함한 주요 부품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9조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제328회 임시회 동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4월에서 3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전 재정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한 소요 일정을 고려하여 회계감사 결과 보고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6조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운항요금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운항요금이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7조는 재정기획관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재정지원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 수가 늘어난 만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2조는 한강버스 협약에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협약 변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의안 제출이 아닌 상임위원회 보고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강버스 운영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용기 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을”을 “탱크 및 배터리 상태 등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상태를”로 한다.

제9조 중 “4월”을 “3월”로 한다.

제1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항요금 관련 사항

제17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강”을 “재정 기획관, 한강”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리버버스 운영과 관련한세부사항”을 “한강버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에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 중 “리버버스”를 각각 “한강버스”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중 “리버버스”를 각각 “한강버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5조 제목 및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5항제1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4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리버버스</u>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리버버스의</u>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리버버스</u>”란 선박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한강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2. “<u>리버버스 사업자</u>”(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선 및 도선 사업	제1조(목적) ----- <u>한강버스</u> 운영 ----- ----- <u>한강버스</u> ----- -----. 제2조(정의) ----- -----. 1. “<u>한강버스</u>” ----- ----- ----- ----- ----- ----- ----- 2. “<u>한강버스</u> ----- ----- -----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선
사업 면허를 받아 리버버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입금”이란 리버버스 사업
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항수입,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4. “지출금”이란 리버버스 사업
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항지출, 부대사업 지출 등을
말한다.

5. 6.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리버
버스 운영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증진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속적
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리버버스에 대한 재
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
는 대중교통으로서 편의와 안전
성이 증진되도록 리버버스 운항에
다양한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 한강버스 --
-----.

3. ----- 한강버스 ---

-----.

4. ----- 한강버스 ---

-----.

5. 6.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한강
버스 -----

-----.

② ----- 한강버스-----

-----.

③ ----- 한강버스-----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

----- 한강버스 -----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장 리버버스 운영 및 지원

제5조(리버버스의 노선 및 운영)

시장은 이용 수요, 선착장 설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리버버스 운항노선과 운항시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리버버스 홍보 등 리버버스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7조(안전운항 증진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리버버스의 안전한 운항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리버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사업자별 법규위반 현황, 선박 사고 및 선박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장 한강버스 운영 및 지원

제5조(한강버스의 노선 및 운영)

----- 한강
버스 -----
-----.

제6조(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한강버스 ----- 한강버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운항 증진을 위한 시책)

① ----- 한강버스 ----- 한강
버스 -----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는 선박 내·외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선박의 연료 용기 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선한 경우 가까운 선착장에 하선하도록 할 수 있다.

1. 리버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 4. (생략)

제8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리버버스 사업의 운항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리버버스 운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제9조(외부감사) 재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자는 매년 시와 협의하

③ -----

탱크 및 배터리 상태 등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상태를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한강버스 -----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의 지원) ① -----

-----.

1. 한강버스 -----

2. ----- 한강버스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외부감사) -----

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
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한다.

1. ~ 3. (생략)

<신설>

4. 그 밖에 리버버스 운영 및 환
경친화적 선박 보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한강 관리업무를 담
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서울
특별시의회 의원과 교통·친환
경에너지·선박·경제·회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

----- 3월 ---
-----.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한강버스

-----.

1. ~ 3. (현행과 같음)

4. 운항요금 관련 사항

5. -----한강버스 -----

제1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10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재정기획관, 한강 ---

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⑩ (생략)

제22조(업무협약) 시장은 리버버스 운영과 관련한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22조(업무협약) ① -- 한강버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② 시장은 업무협약에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